

제2024 - 1976호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공고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일

울진군수

□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현지거주 청년어업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5. 1. 1. ~ 2007.12.31.출생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수산업 경영 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를 준용* '어업 및 양식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 및 양식업 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 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5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 경력 1년차(2024.1.1 이후 등록자~2025년 예정자), 2년차(2023.1.1~12.31 등록자), 3년차(2022.1.1~12.31 등록자)○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포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 제2조와 「수산유통법」 제2조를 준용*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	---

	<p>경영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p> <p>*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p> <p>○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p> <p>※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p> <p>○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p> <p>- 다만,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p> <p>○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가능</p>								
<p>지원제외 대상자</p>	<p>○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의 남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수산물 가공·유통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p>※ 기준: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p> <p>※ 아래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p> <p style="text-align: center;"><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 ></p> <table border="1" data-bbox="391 1467 1420 160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역가입자 부과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세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304,986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71,091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14,423원</td> </tr> </tbody> </table> <p>☑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p>○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p> <p>○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p>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304,986원	271,091원	314,423원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304,986원	271,091원	314,423원						
	<p>○ 자금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p>지원내용</p>	<p>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양식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은 제외 - 심야시간(오후11시~오전6시)에는 체크카드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2024.1.1.이후 등록자~2025년 예정자) : 월 110만원 지원 ○ 2년차(2023.1.1.~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지원 ○ 3년차(2022.1.1.~12.31. 등록자) : 월 90만원 지원 * 영어정착자금 수급기간 중 어업을 하지 않거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반환 조치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작지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매월) ○ 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다만, 12월분 지원액의 지출잔액은 이월 사용 불가) 												
<p>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사업시행자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 <table border="1" data-bbox="391 1556 1428 2049"> <thead> <tr> <th>의무사항</th> <th>준수 사항</th> <th>위반 시 조치사항(제재)</th> </tr> </thead> <tbody> <tr> <td>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td> <td>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 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td> <td>당해 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td> </tr> <tr> <td>재해보험 가입</td> <td>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가입</td> <td>당해 연도 미 가입시 차년도 3개월 간 지원 중단</td> </tr> <tr> <td>어업경영 계획이행</td> <td>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어업경영계획 변경(어업경영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td> <td>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td> </tr> </tbody> </table>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 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당해 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가입	당해 연도 미 가입시 차년도 3개월 간 지원 중단	어업경영 계획이행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어업경영계획 변경(어업경영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 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당해 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가입	당해 연도 미 가입시 차년도 3개월 간 지원 중단											
어업경영 계획이행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어업경영계획 변경(어업경영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성실 신고	제출 서류	어업경영계획서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 점검	어업경영이행실적보고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환수 (월할)
	지원금 성실사용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 시점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의무 어업경영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어업경영 종사 의무	실제 어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어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 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전업적 어업경영 유지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어업경영 포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어업경영을 위탁 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금지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 (월할)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체재부가금, 제40조 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용용도 및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 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u>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u> ○ <u>물품구매 시 월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u> 예) 1년차(지원 단가 11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 되더라도, 1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1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별표3] 사용 가능 업종 참고 			
신청기간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08.(일)까지(14일간) ○ 접 수 처 :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1부 - 관련 교육 이수증 1부 - 어업면허, 허가, 신고 관련서류 1부(해당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경영체등록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li style="padding-left: 20px;">*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 병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서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54-789-68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